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7. 20.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7. 1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부서별 분장 사무,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

○ 신설 부서 : 3개부서(자원관리팀, 균형정책팀, 투자유치팀)

- 명칭변경 부서(16개 부서)
  - 경제투자본부(2개 부서)
    - 경제과 → 경제정책팀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균형발전본부(3개 부서)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팀
    - 교통과 → 교통물류팀
    - 건축문화과 → 건축팀
  - 농정본부(5개 부서)
    - 농정과 → 농업정책팀
    - 농산지원과 → 농산지원팀
    - 원예유통과 → 원예유통팀
    - 축산과 → 축산팀
    - 산림과 → 산림녹지팀
  - 건설재난관리본부(2개 부서)
    - 도로과 → 건설정책팀
    - 민방위안전관리과 → 하천관리팀
  - 복지여성국(2개 부서)
    - 사회복지과 → 복지정책과
    - 체육청소년과 → 청소년아동과
  - 문화관광환경국(2개 부서)
    - 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관광과 → 관광진흥과
- 부서간 위임사무 조정
  - 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경제정책팀 → 기업지원팀)
  - 전기, 에너지이용, 계량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팀 → 자원관리팀)
  -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지역개발팀 → 균형정책팀)

- 지방하천 등에 관한 사항(민방위안전관리과→하천관리팀)
- 조수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산림녹지팀→환경과)
- 지방산업단지개발 등에 관한사항(지역개발팀→투자유치팀)

나. 부서별 주요개정내용

**【총무과】**

- 실국별 정원제 운영에 따라 자치연수원, 생명산업추진단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으로 확대 위임
- 농업기술원 5급상당 지방연구원·지도관 공무원 원내 전보권 위임 사무 신설

**【자원관리팀】**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계량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교통물류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유상 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의 사무” 삭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특수여객 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무”가 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어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건축팀】**

- 「주택법」의 도지사 사무인 “공사 착수신고 및 기간연장” 사무

를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농산지원팀】

- 도지사 사무인 “도유행정재산(구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공유재산조례」에 의거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산림녹지팀】

- 「산림법」 폐지에 따라 “보안림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조림·육림·벌채등에 관한사무”를 삭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인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경제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군지역 또는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가로수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보건위생과】

-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성병매개 우려자에 대한 건강진단 명령”, “소독업의 신고”, “예방접종의 용도 변경”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

### 【환경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도지사 사무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 【수질관리과】

- 「먹는물관리법」의 도지사 사무인 “유통샘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검사”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경제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관련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 및 역동적 도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 12월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동시에,
-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여 충청북도 각 부서의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 나. 종합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는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등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기(2006. 12. 22, 조례 제2965호)를 감안할 때 다소 지체되었다고 여겨짐.
- 향후에는 자치법규에 의한 책임행정 구현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확보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정과	1 2 3 4	· 도세 징수유예 · 도세 기한의 연장 · 도세 결손처분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지방세법 제41조 동법 제26조의 2 동법 제30조의 3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계과	1 2 3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 도유잡종재산 관리 · 도유폐천부지관리 및 매각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6조 동 조례 제3조 하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경제정책팀	1 2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 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수리 나.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다. 영업의 정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2조제5항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3조제3항, 제4항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동법률 제24조 동법률 제26조 동법률 제64조
투자유치팀	1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사무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투자유치팀		가.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라.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에 대한 협의 마. 공공시설의귀속 및 양도에 관한협의 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처리를 위한 감사의뢰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차.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동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19조의2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7조제2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 동법 제37조제5항 동법 제37조제7항 동법 제48조
기업지원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의 설립신고(2개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 이하 제21호 까지 같다)</li> <li>•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li> <li>•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수리</li> <li>•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li> <li>• 노동조합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명령</li> <li>• 노동조합의 자료제출</li> <li>• 노동조합의 해산신고수리</li> <li>•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li> <li>•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및 공고</li> <li>•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수리</li> <li>• 쟁의행위의 중지명령</li> <li>• 직장폐쇄 신고수리</li> <li>• 과태료의 부과징수</li> <li>• 노동조합의 대표자등에 대한 명령등의 통보</li> <li>• 노동쟁의행위의 신고수리</li> <li>• 폭력행위등의 신고수리</li> <li>•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li> </ul>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제4조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동법시행규칙제 9조 동법 제16조, 제21조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3조,동법시행규칙제10조 동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0조,동법시행령제 19조,동법시행규칙제11조3 동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2조,동법시행규칙제12조 동법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동법 제96조, 동법시행령제3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원 관리팀	1	·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제3항
	2	· 10만V 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미만 및 발전용량 200KW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동법 제71조
	3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4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권한 가. 사업(변경) 허가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해임요구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제3조 동법 제3조의2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8조의2 동법 제10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36조의2 동법 제48조 동법 제34조
	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동법 제34조
	6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5항 동법 제58조제6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100조
	7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동법 제71조
	8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89조제2항
	9	·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10	·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가. 청문	동법 제38조 동법 제41조 제2항
	11	·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승인 가.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12	· 보고 및 검사등	동법 제34조
	13	· 개선명령	동법 제35조
	14	· 부정계량기의 처리	동법 제37조
	15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동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분야별 원림번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관 리 원 림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li> <li>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li> <li>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li> <li>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li> </ul>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제3항</p> <p>동법 제 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p>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li> <li>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li> <li>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li> </ul>	<p>동법 제 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 35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p>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행정대집행</li> </ul>	<p>동법 제30조</p>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검사</li> </ul>	<p>동법 제38조</p>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청문</li> </ul>	<p>동법 제40조</p>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li> </ul>	<p>동법 제 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p>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li> </ul>	<p>동법 제41조</p>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li> </ul>	<p>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4항</p>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li> </ul>	<p>동법 제18조제2항</p>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li> </ul>	<p>동법 제21조제1항제4호</p>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li> </ul>	<p>동법 제28조</p>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에너지사용량 신고</li> <li>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li> <li>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li> </ul>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p> <p>동법 제89조제1항</p> <p>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p> <p>동법 제100조제2항</p>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공산품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판매중지·개선·파기·수거명령 등</li> <li>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li> <li>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li> <li>다.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li> <li>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li> <li>마.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등의 명령</li> <li>바. 보고 및 검사등</li> <li>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ul>	<p>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p> <p>동법 제32조</p> <p>동법 제41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원관리팀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항</li> <li>가.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li> <li>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li> <li>다. 보고 및 검사 등</li> <li>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ul>	<p>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8조 동법 제8조</p> <p>동법 제11조 동법 제18조</p>
균형정책팀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li> <li>·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 되는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역변경은 제외)</li> <li>·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 주차장</li> <li>다. 궤도</li> <li>라. 삭도</li> <li>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li> <li>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li> <li>사.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li> <li>아.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li> <li>자. 공동구</li> <li>차. 공공공지</li> <li>카. 수도공급설비</li> <li>타.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li> <li>파.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li> <li>하. 방송·통신시설</li> <li>거. 시장</li> <li>너. 열공급설비</li> <li>더.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li> <li>러.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li> <li>머.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li> <li>버. 도서관</li> <li>서. 문화시설</li> <li>어. 연구시설</li> <li>저. 사회복지시설</li> <li>처. 공공직업훈련시설</li> <li>커. 청소년수련시설</li> <li>터. 유수지</li> <li>피. 방화설비</li> <li>허. 저수지(댐 제외)</li> <li>고. 방풍설비</li> <li>노. 방수설비</li> <li>도. 사방설비</li> <li>로. 방조설비</li> <li>모.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li> <li>보. 도축장</li> <li>소. 장례식장</li> </ul> </li> </ul>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 25조 제 3항 내지 제5항</p> <p>동법 제30조, 제50조</p> <p>동법 제30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p>균형 정책팀</p>		<p>오. 종합의료시설                      조. 폐차장                      초.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코. 폐기물처리시설                      토. 수질오염방지시설                      포. 하천(소하천에 한함)</p>		
	4	<p>· 10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개발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p>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5	<p>· 기존면적포함 10만㎡ 미만의 산업형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변경)</p>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6	<p>·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p>	동법 제32조	
	7	<p>·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p>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p>지역 개발팀</p>	1	<p>·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분묘등의 정리</p>	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2	<p>· 행정처분 및 명령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p>	동법 제133조
3		<p>·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p>	동법 제32조	
4		<p>·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p>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5		<p>·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p>	동법 제88조 내지 제91조	
6		<p>·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p>	동법 제98조	
7		<p>·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바.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아.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p>	<p>도시개발법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5조                      동법 제67조</p>	
8		<p>·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p>	<p>동법 제1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p>	
9		<p>·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현경 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결정 (현경 포함)</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팀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2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등 나. 사용신고의 거부 다. 도난신고의 처리 라.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바. 운행정지명령 및 정비, 원상복구 명령 사. 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28조		
			3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실시 다.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라.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4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제3조, 제5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팀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동법 제6조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동법 제9조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세김 명령등	동법 제11조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취소	동법 제8조의2
		아.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
		자. 보고 및 검사	동법 제35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4조
		카.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타.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파.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동법 제34조의2
		하.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신고의 수리	동법 제21조
		거.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24조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6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변경신고, 폐지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7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8조
	8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0조
	9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제1항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동법 제39조
		다. 공사의 완성	동법 제39조제4항
		라. 사용개시	동법 제40조
	마. 사용약관 인가	동법 제41조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동법 제42조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동법 제43조제3항	
	아. 터미널의 관리	동법 제43조	
	자. 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동법 제44조	
	차.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동법 제45조	
	카. 사업개선 명령	동법 제4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팀		타. 사용명령 파.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하. 면허의 취소 거. 과징금 처분 니. 청문 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러.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머. 정관변경 등의 명령 버. 재정지원, 조합감독 서.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시 관계 행정기관장관의 협의 및 통보	동법 제47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76조 동법 제79조 동법 제77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51조, 제59조 동법 제49조제3항, 제4항
	10	· 자동차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규·변경)신고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신고 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11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11조 제2항, 제36조 동법 제 15조제 1항 제 3항 제 36조 동법 제16조제1항, 제36조 동법 제17조제2항, 제36조 동법 제76조  동법 제77조 동법 제79조  동법 제85조
1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을버스·특수여객자동차·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한다) 가. 사업의 등록 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 개시기간 연장승인 다. 운임·요금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한한다)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마. 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 및 신고수리 바. 사업관리위탁신고 수리 사. 사업양도·양도신고수리·인가와 합병신고 수리 아.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자. 사업휴지·폐지허가 및 신고수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제1항제·2항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제2항 동법 제17조 제1항·제2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팀		차. 중대한 교통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카. 사업개선명령 타. 사업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파. 청문 하. 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거.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17조제1항·제2항 동법 제24조 동법제 76조 동법 제77조 동법 제79조 동법 제85조
건축팀	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16조
	2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16조
	3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4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농업정책팀	1	·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농산지원팀	1	·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	식물방역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2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동법 제21조
	3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4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5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발기반정비사업(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미만) 개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 제12조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농 산 지 원 팀	6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동법 제17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제2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7		
	8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원 예 유 통 팀	1	·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3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2		
축 산 팀	1	·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 약사 변경신고의 수리 ·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분 승인권자 나. 재산처분의 제한 다.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 라. 재산처분 제한의 해제 마. 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 바. 시설의 관리책임 등 사. 영어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	동법 제21조제1항, 제2항 동법 제7조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등록규칙 제10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8조 동 규정 제39조 동 규정 제40조 동 규정 제41조 동 규정 제42조 동 규정 제43조 동 규정 제44조
	2		
	3		
	4		
산 림 녹 지 팀	1	· 산림병해충의구제.예방에대한 조치명령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사항의 명령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및 지정해제.통지 및 고시 · 종.묘생산업의 등록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 보안림관리에 대한 다음사항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해제 다.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라.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금지 및 제한 마. 보안림의 지정 및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바.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의 관리 등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 간선임도 설치계획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제4항  동법 제16, 동법시행규칙제13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법률제5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3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2		
	3		
	4		
	5		
	6		
	7		
	8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건설 정책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사항</li> <li>가. 등록</li> <li>나. 변경사항 신고수리</li> <li>다.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수리</li> <li>라. 업체에 대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 제출요구</li> <li>마. 시정명령·지시</li> <li>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li> <li>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li> <li>아. 청문</li> <li>자. 과태료 부과·징수</li> <li>차. 등록대장의 작성·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산업기본법 제9조</li> <li>동법 제9조의2</li> <li>동법 제17조</li> <li>동법 제49조</li> <li>동법 제81조</li> <li>동법 제82조</li> <li>동법 제83조</li> <li>동법 제86조</li> <li>동법 제101조</li> <li>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li> <li>동법시행령 제17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li> <li>나. 점용공사의 확인</li> <li>다. 점용료의 징수</li> <li>라. 점용료의 징수제한</li> <li>마. 원상회복</li> <li>바. 변상금의 징수</li> <li>사. 수수료의 징수</li> <li>아. 과태료 부과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li> <li>동법 제40조제3항</li> <li>동법 제43조제1항</li> <li>동법 제44조</li> <li>동법 제45조</li> <li>동법 제80조의 2</li> <li>동법 제77조의 2</li> <li>동법 제86조의 2</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li> <li>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li> <li>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50조제4항</li> <li>동법 제50조제4항</li> <li>동법 제50조제6항</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li> <li>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li> <li>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li>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li> <li>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li> <li>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li> <li>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li> <li>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li> <li>다.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li> <li>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li> <li>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li> <li>바. 도로에 관한 조사</li> <li>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29조</li> <li>도로법 제31조</li> <li>동법 제54조제1항</li> <li>동법 제67조제1항</li> <li>동법 제75조</li> <li>동법 제76조의 2</li> <li>동법 제78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건설 정책팀	7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이전 등) 자. 도로등과의 연결허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61조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 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품품관리법 제11조
	8	· 도유재산 용도폐지	동법 제14조, 제20조
하천 관리팀	1	·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이하 “지방하천”이라 한다)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4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등 조치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8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작성한 하천 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 승인	동법 제16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5	· 비관리청 시행 하천 공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 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30조제2항 동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3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제30조제7항 동법 제31조
	6	· 비관리청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 인가 또는 검사의뢰	동법 제32조제2항
	7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 하천정비 시행계획 및 비관리청 하천 공사 실 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32조제2항
	8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가. 유수의 사용	동법 제33조제1항제1호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하천 관리팀	나. 토지의 점용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	
	라.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동법 제33조제1항제4호	
	마.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동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동법 제33조제1항제6호	
	사.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동법 제33조제1항제7호	
	아. 식물의 재식	동법 제33조제1항제8호	
	자. 선박의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동법 제33조제1항제9호	
	9	·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동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10	· 지방하천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동법 제33조제5항
	11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12	· 지방하천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13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동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52조
	14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동법 제69조
	15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4조
	16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동법 제65조
	17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18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연안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동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하천 관리팀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19	· 지방하천 예정지 및 연안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동법 제40조제2항
	20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납시행위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동법 제71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50조
	21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동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51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53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동법 제76조
	24	· 하천감시원의 임명 등	동법 제68조
	2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동법 제80조
	26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취소시 청문	동법 제81조
	27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8조
	28	· 보상금액의 산정	법률제 3782호 하천법중개정 법률부칙제 2조의규정에의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 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8조
	29	· 보상금 지급의 통지	동법시행령 제9조
	30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시행령 제11조
31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2	· 도유재산 용도폐지	동법 제11조	
복지 정책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	·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가. 수용시설의 제공(응급가설주택 포함)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재해구호법 제5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복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의료 및 조산</li> <li>라. 이재자의 구출</li> <li>마. 이재주택의 응급수리</li> <li>바.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li> <li>사. 생업알선</li> <li>아. 장사</li> </ul>	
청소년 아동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li> <li>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li> <li>나.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신고수리</li> <li>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수리</li> <li>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증 교부</li> <li>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li> <li>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가입</li> </ul>	<p>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p> <p>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3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항</p> <p>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4항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p> <p>청소년기본법 제33조</p>
보건 위생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약사업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li> <li>· 한약사업의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li> <li>· 한약업자 영업소 이전허가</li> <li>·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li> <li>·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반환, 회수, 환수</li> <li>· 안마시술소의 청문 및 행정처분</li> <li>·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li> <li>·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li> <li>·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li> <li>·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li> <li>· 마약원료의 양도승인</li> <li>·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li> <li>·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li> </ul>	<p>약사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p> <p>동법시행규칙 제49조</p> <p>동법시행규칙 제52조</p> <p>동법시행규칙 제36조</p> <p>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12조</p> <p>안마사에관한규칙 제9조, 제10조</p> <p>안마에관한규칙 제8조</p> <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p> <p>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p> <p>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p> <p>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p> <p>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p> <p>동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 위생과	14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5	· 마약의 소매 보고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16	· 마약취급자의 업무소 등 출입, 기록서류 검사 및 검사용 마약류 수거	동법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7	· 폐기명령 등	동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18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의 마, 바, 아, 자)	동법 제43조
	19	·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동법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	· 청문	동법 제45조
	21	·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동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22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동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23	· 몰수 마약류의 폐기·처분 등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24	·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25	· 이·미용사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0조
26	·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단, 면허취소는 면허증 최초교부 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동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관광 진흥과	1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제6조
	2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2조제3항
환경과	1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2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동법 제4조 및 제5조
	3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8조의2
	4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li> <li>가. 신고 및 변경신고</li> <li>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28조제1항</li> <li>동법 제28조 제2항, 제3항</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28조의 2</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및 검사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49조제1항 제 3,4,4외 2,4의3,5,8의2호</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52조 제3호제4호제5호</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검사의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2종 사업장 제외.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제4항</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사항</li> <li>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li> <li>나.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li> <li>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li> <li>라. 손실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환경보전법제5조 제2항, 제4항</li> <li>동법 제7조</li> <li>동법 제8조</li> <li>동법 제9조</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 행정조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li> <li>가.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조치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32조</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li> <li>가.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및 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인정</li> <li>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 제25조</li> <li>동법 제26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15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마.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다.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하.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너. 허가증의 재교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의2 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2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및 동법시행규칙6조의4 동법시행규칙제19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1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보관기간 연장 승인,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표기 또는 부착크기에 대한 조정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수리, 건설공사 현장 이외에서의 재활용 승인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동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제3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17	차. 보고·검사 등	동법 제34조
		카.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조치·이행상황 점검요구, 처리명령, 처리이행 보증 조치	동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동법 제45조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의 수령	동법 제46조
		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동법 제57조
수질과	18	거. 행정처분	동법 제61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6조
		· 조수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다음사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의 설정,해제 및 고시	동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제4조제4항
		나. 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개발등의 행위 및 이용 개발등의 허가·승인의 협의	동법시행령제6조
19	다. 손실보상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9조	
	라. 특별보호지구안에서의 수목의 벌채등의 허가등	동법제5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조수보호원등의 임명,해임에 대한 다음사항	동법제5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가. 조수보호원등의 임명 또는 위촉	동법제5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조수보호원등의 해임 또는 해촉	동법제5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다. 조수보원증 및 명예조수보호원증 발급 및 대장정리	동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수질과	1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 하수종말처리시설외 공공하수설치인가에 관한 권한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	하수도법 제6조제1항
2	·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의 위법공사에 대한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3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질관리과	4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18조제6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제3항 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제1항, 제3항 동법 제51조제2항, 제3항, 제4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등</li> </ul>	먹는물 관리법 제34조

## [별표 3]

##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 호 구 조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li> <li>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 허가 및 용도폐지</li> <li>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 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li> <li>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li> <li>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 명령</li> <li>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정지</li> </ul>	<p>위험물안전관리법제 6조제1항 제11조</p> <p>동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7조</p> <p>동법 제12조</p>

## [별표 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대상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li> <li>부교수이하 임용권</li> </ul>	충북 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li> </ul>	자치연수 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연구직·지도직의 호봉승급</li>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li> <li>5급상당 지방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전보권(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li> </ul>	농업기술 원장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li> </ul>	보건환경 연구원장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단내 전보권</li> </ul>	생명산업 추진단장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본부내 전보권</li> </ul>	도로관리 사업소장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산림환경 연구소장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축산위생 연구소장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농산사업 소장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세정과	1~4	(생략)		세정과		(현행과 같음)	
회계과	1~3	(생략)		회계과		(현행과 같음)	
경제과	1	(생략)		경 제 정책팀		(현행과 같음)	
	2	○ <u>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개 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 이하 제 2호 까지 같다)</u>	<u>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제 10조 동법시행규칙제 2조</u>	<삭제>		<삭제>	<삭제>
	3	○ <u>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u>	<u>동법 제 12 조, 동법시행령 제 9 조, 동법시행규칙 제 4 조</u>	<삭제>		<삭제>	<삭제>
	4	○ <u>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수리</u>	<u>동법 제 13 조, 동법시행령 제 10 조, 동법시행규칙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u>	<삭제>		<삭제>	<삭제>
	5	○ <u>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u>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8 조 동법시·</u>	<삭제>		<삭제>	<삭제>
	6	○ <u>노동조합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명령</u>	<u>동법 제 16 조 제 21 조</u>	<삭제>		<삭제>	<삭제>
	7	○ <u>노동조합의 자료제출</u>	<u>동법 제 27 조 동법시행령 제 12 조</u>	<삭제>		<삭제>	<삭제>
	8	○ <u>노동조합의 해산신고수리</u>	<u>동법 제 28 조 동법시행령 제 13 조 동법시행규칙 제 10 조</u>	<삭제>		<삭제>	<삭제>
	9	○ <u>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u>	<u>동법 제 31 조 동법시행규칙 제 11 조</u>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과	10	○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 적용 결정 및 공고	동법 제36조	경제정책팀	<삭제>	<삭제>	<삭제>
	11	○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수리	동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3		<삭제>	<삭제>	<삭제>
	12	○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동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삭제>	<삭제>	<삭제>
	13	○ 직장폐쇄 신고수리	동법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삭제>	<삭제>	<삭제>
	14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삭제>	<삭제>	<삭제>
	15	○ 노동조합의 대표자등에 대한명령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11조		<삭제>	<삭제>	<삭제>
	16	○ 노동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삭제>	<삭제>	<삭제>
	18	○ 폭력행위등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8조		<삭제>	<삭제>	<삭제>
	19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동법시행규칙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20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투자유치팀	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투 자 유치팀		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처리를 위한 감사의뢰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차.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	동법 제 27조 제2항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 률제37조제 4항 동법 제 37조 제5항 동법 제 37조 제7항 동법 제 48조
기 업 지원과	<신설>	<신설>	<신설>	기 업 지원팀	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개 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은 제외, 이하 제 2항 까지 같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 정법제 10조, 동법시행규 칙제2조
	<신설>	<신설>	<신설>		2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	동법 제12 조, 동법시 행령 제 9조, 동법시행규 칙제4조
	<신설>	<신설>	<신설>		3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13 조, 동법시 행령 제 10조, 동법시행규 칙 제 3 조, 제5조, 제 6조
	<신설>	<신설>	<신설>		4	·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노 동 조 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제 18조 동법시 행규 칙 제 9 조
	<신설>	<신설>	<신설>		5	· 노동조합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명령	동법 제16조 제21조
	<신설>	<신설>	<신설>		6	· 노동조합의 자료제출	동법시행령 제12조
	<신설>	<신설>	<신설>		7	· 노동조합의 해산신고수리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제 10조
	<신설>	<신설>	<신설>		8	·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동법 제31조 동법시행규 칙제11조
	<신설>	<신설>	<신설>		9	·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및 공고	동법 제 36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기업 지원과	<신설>	<신설>	<신설>	기업 지원팀	10	·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수리	동법 제40 조, 동법시행 령제 19조, 동 법시행규칙 제11조3
	<신설>	<신설>	<신설>		11	·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동법 제42 조, 동법시 행령제 22조, 동법시행규 칙제 12조
	<신설>	<신설>	<신설>		12	· 직장폐쇄 신고수리	동법 제46 조, 동법시 행규칙제 12 조의2
	<신설>	<신설>	<신설>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96조, 동법시행령제 34조
	<신설>	<신설>	<신설>		14	· 노동조합의 대표자등에 대한 명령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11조
	<신설>	<신설>	<신설>		15	· 노동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7조, 동 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신설>	<신설>	<신설>		16	· 폭력행위등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8조
	<신설>	<신설>	<신설>		17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동법시행규 칙 제7조
	1~28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차 원 관리팀	1	·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88 조 제2 항, 제3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 10만V 미만으로서 전기수 용설비 500KW미만 및 받 전용량 200KW미만 의 차 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 리·개조·이전 또는 사 용정지나 제한 명령	동법 제7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 설비 제조(변경)등록	고압가스안 전관리법제 5조제1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 조사업에 관 한 권한 가. 사업(변경) 허가	액화석유가 스의안전관 리및사업법 제3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 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동법 제 3조 의2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 위 관 리 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동법 제6조
		<신설>	<신설>			라.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7조
		<신설>	<신설>			마.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8조
		<신설>	<신설>			바.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8조의2
		<신설>	<신설>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동법 제10조
		<신설>	<신설>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해임요구 등	동법 제14조
		<신설>	<신설>			자. 청문	동법 제36조의2
		<신설>	<신설>			차.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8조
		<신설>	<신설>		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 명령	동법 제34조
	<신설>	<신설>	<신설>		6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신설>	<신설>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5항
		<신설>	<신설>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동법 제58조제6항
		<신설>	<신설>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동법 제59조제4항
		<신설>	<신설>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동법 제100조
	<신설>	<신설>	<신설>		7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동법 제71조
	<신설>	<신설>	<신설>		8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89조제2항
	<신설>	<신설>	<신설>		9	·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신설>	<신설>	<신설>		10	·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가. 청문	동법 제38조 동법제41조제2항
	<신설>	<신설>	<신설>		11	·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증인 가.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34조
	<신설>	<신설>	<신설>		12	· 보고 및 검사등	동법 제34조
	<신설>	<신설>	<신설>		13	· 개선명령	동법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차원관리팀	14	· 부정계량기의 처리	동법 제37조
	<신설>	<신설>	<신설>		15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동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신설>	<신설>	<신설>		16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 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신설>	<신설>	<신설>		17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변경 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신설>	<신설>	<신설>		18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행정대집행	동법 제30조
	<신설>	<신설>	<신설>		19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38조
	<신설>	<신설>	<신설>		20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0조
	<신설>	<신설>	<신설>		21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신설>	<신설>	<신설>		22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동법 제41조
	<신설>	<신설>	<신설>		23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
	<신설>	<신설>	<신설>		24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동법 제18조제2항
	<신설>	<신설>	<신설>		25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신설>	<신설>		26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범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동법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신설>	<신설>	<신설>		자 위 관리팀	27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이용 합 리화법 제 23조 제1항
		<신설>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 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동법 제89조제 1항 동법시행규 칙 제23조 제 2항
		<신설>	<신설>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 100조 제2항
	<신설>	<신설>	<신설>		28	· 다음 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중지·개 선·파기·수거명령 등	품질경영및공 산품안전관리 법 제31조
		<신설>				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신설>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신설>				다.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신설>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신설>				마.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 환불·수리등의 명령	
		<신설>	<신설>			바. 보고 및 검사등	동법 제32조
		<신설>	<신설>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동법 제41조
	<신설>	<신설>			29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항	
		<신설>	<신설>			가.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전 기 용 품 안전관리법 제8 조
		<신설>	<신설>			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 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동법 제8조
		<신설>	<신설>			다.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11조
		<신설>	<신설>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동법 제18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균 형 정책팀	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5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 및 고시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법률 제30 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 25조 제3항 내 지 제5항
	<신설>	<신설>	<신설>		2	·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시의 제되는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 역변경은 제외)	동법 30조,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과		<신설>	<신설>	교통물류팀	12	자. <u>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u>	동법 제76조
		<신설>	<신설>			차. <u>청문</u>	동법 제77조
		<신설>	<신설>			카. <u>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 계획 수립.시행</u>	동법 제79조
		<신설>	<신설>			타. <u>과태료의 부과·징수</u>	동법 제85조
		<신설>	<신설>			·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타일버스·특수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u>	
		<신설>	<신설>			가. <u>사업의 등록</u>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신설>	<신설>			나. <u>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 연장 승인</u>	동법 제8조
		<신설>	<신설>			다. <u>운임·요금신고수리(타일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u>	동법 제9제1항·제2항
		<신설>	<신설>			라. <u>운송약관신고 및 변경 신고수리</u>	동법 제10조
		<신설>	<신설>			마. <u>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 및 신고수리</u>	동법 제11조
		<신설>	<신설>			바. <u>사업관리위탁신고 수리</u>	동법 제14조
		<신설>	<신설>			사. <u>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인가와 법인합병신고 수리</u>	동법 제15조
		<신설>	<신설>			아. <u>사업의 상속신고 수리</u>	동법 제16제2항
		<신설>	<신설>			자. <u>사업휴지·폐지허가 및 신고수리</u>	동법 제17제1항·제2항
		<신설>	<신설>			차. <u>중대한 교통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u>	동법 제17제1항·제2항
		<신설>	<신설>			카. <u>사업개선명령</u>	동법 제24조
		<신설>	<신설>			타. <u>사업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u>	동법 제76조
		<신설>	<신설>			파. <u>청문</u>	동법 제77조
		<신설>	<신설>			하. <u>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u>	동법 제79조
		<신설>	<신설>			거. <u>과태료 부과·징수</u>	동법 제85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건축 문화과	1	○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단, 500세대 이상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1,000세대 이상의 승인 및 취소는 제외)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건축팀	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6조
	2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권한 (단, 시장·군수가 사업주체인 사업, 500세대 이상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1,000세대 이상의 승인 및 취소는 제외)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2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6조
	3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3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신설>	<신설>			4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 승인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농정과		(생략)		농업 정책팀		(현행과 같음)	
농산 지원과	1~6	(생략)		농산 지원팀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7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신설>	<신설>		8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원예 유통과	1~2	(생략)		원예 유통팀		(현행과 같음)	
축산과	1~4	(생략)		축산팀		(현행과 같음)	
산림과	1	(생략)	산림법 제103조	산림 복지팀	1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	○ 영림기술자 고용명령	동법 제103제3항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산림과	3	○ 천연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사항의 명령 나. 천연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 통지 및 고시	동법 제68조 동법 제62조, 제70조 동법 제67조, 제69조	산림 녹지팀	2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사항의 명령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및 지정해제, 통지 및 고시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제4항
	4	○ 중.요생산업의 등록	동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제39조		3	· 중.요생산업의 등록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제13조
	5	○ 중.요생산업의 등록 취소	동법 제48조		4	· 중.요생산업의 등록 취소	동법 제16조
	6	○ 보안림관리에 대한 다음사항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해제 다.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라.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 금지 및 제한 마. 보안림의 지정 및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바.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사. 보안림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수리 아. 조림 또는 복구명령 자. 조림,육림,벌채 등 권장 및 시행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59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0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 66조의2		5	· 보안림관리에 대한 다음사항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해제 다.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라.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금지 및 제한 마. 보안림의 지정 및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바.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의 관리 등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법 제43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 조수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다음사항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의 설정, 해제 및 고시 나. 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개발등의 행위 및 이용,개발등의 허가,인가,승인의 협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4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산림과	8	다. 손실보상	동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 제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	산림 복지팀	<삭제>	<삭제>	<삭제>	
		라. 특별보호지구안에서의 수목의 별채등의 허가 등	동법시행령 제6조		<삭제>	<삭제>	<삭제>	
		○ 조수보호위 등의 임명, 해임에 대한 다음사항	조수보호및 수림에관한 법률 제 5조 제 5 조 의 2, 동법시행규 칙 제9조		<삭제>	<삭제>	<삭제>	
		가. 조수보호위원등의 임명 또는 위촉	동법 제 5조 의 4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삭제>	<삭제>	<삭제>	
		나. 조수보호위원등의 해임 또는 해촉	동법 제 25 조, 동법시 행규칙 제52조		<삭제>	<삭제>	<삭제>	
		다. 조수보호위원등 및 명예 조수보호위원등 발급 및 대장정리	동법 제 25 조, 동법시 행규칙 제52조		<삭제>	<삭제>	<삭제>	
		9 ○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등 신고수리	동법 제 25 조, 동법시 행규칙 제52조		6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 호직원배치 에 관한법 률 제5조	
		10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 호직원배치 에 관한법 률 시 행 령 제7조 <신설>		7	· 간선임도 설치계획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 5조제3항	
		<신설>	<신설>		<신설>	8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 정제3조
		<신설>	<신설>		<신설>	1	·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등록 나. 변경사항 신고수리 다. 양도, 범위확정 및 상속에 대 한 신고수리 라. 업체에 대한 보고· 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 료 제출요구 마. 시정명령·지시	건설산업기 본법 제9조 동법 제 9조 의 2 동법 제 17 조 동법 제 49 조 동법 제 81 조
도로과	<신설>	<신설>	<신설>	건설 정책팀	1	·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등록 나. 변경사항 신고수리 다. 양도, 범위확정 및 상속에 대 한 신고수리 라. 업체에 대한 보고· 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 료 제출요구 마. 시정명령·지시	건설산업기 본법 제9조 동법 제 9조 의 2 동법 제 17 조 동법 제 49 조 동법 제 81 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로과	1~6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건설정책팀	2	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차.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령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동법 제82조 동법 제83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민방위안전관리과	1~32	(생략)		하천관리팀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과	1~3	(생략)		복지정책과		(현행과 같음)	
체육청소년과	1	(생략)		청소년이동과		(현행과 같음)	
보건위생과	1~23	(생략)		보건위생과		(현행과 같음)	
	24	○ 성병매개 우려자 인정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5	○ 전염병에 대한 강제적 건강진단명령	전염병예방법 제9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6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각호의 1종 전염병 예방조치	동법 제39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7	○ 제1종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42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8	○ 공사립의료기관을 제2종 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 전염병의 진료소 대응 지정	전염병예방법 제25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9	○ 소독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0	○ 소독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수리	동법 제40조의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1	○ 소독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동법 제40조의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2	○ 예방접종약품의 용도변경등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3~35	(생략)			24~26	(현행과 같음)	
관광과	1~2	(생략)		관광진흥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1~13 14	(생략) (생략) 가. ~파(생략) <u>&lt;신설&gt;</u>	폐기물관리법 제25조 <u>&lt;신설&gt;</u>	환경과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파. (현행과 같음) 하.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너. 허가증의 재교부	동법시행령 제6조 및동법시행 규칙제19조 의2 동법시행규칙제 6조의2및동법 시행규칙6조 의4 동법시행규 칙제19조
	15~ 16	(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		17	(현행과 같음) · 조수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의 설정,해제 및 고시 나. 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개발등의 행위 및 이용 개발등의 허가,승인의 협의 다. 손실보상 라. 특별보호지구안에서의 수목의 벌채등의 허가등	조수보호및 수림에 관한 법률제 4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 법시행령 제 5조  동법제 4조, 동법시행령 제 7조, 동법 제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		18	· 조수보호위원등의 임명 해임에 대한 다음사항 가. 조수보호위원등의 임명 또는 위촉 나. 조수보호위원등의 해임 또는 해촉 다. 조수보위원 및 명예조수보호위원증발급 및 대장정리	조수보호및 수림에 관한 법률제 5조, 제 5 조 의 2, 동법시행규 칙제9조 동법제 5조 의4 동법시행규 칙 제12조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	19	· 수입 도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등 신고 수리	동법 제25 조 동법시 행규칙 제 52조	
수질 관리과	1	· 지하수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	지하수법 제 17조제 2항 및 제 3항 동 법시행령 제 28조제1항	수질 관리과	<u>&lt;삭제&gt;</u>  <u>&lt;삭제&gt;</u>	<u>&lt;삭제&gt;</u>  <u>&lt;삭제&gt;</u>	<u>&lt;삭제&gt;</u>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질관리과		나.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시료채취후 봉인 및 검사결과에 조치	동법 제 20 조, 동법 시행령 제 29 조 및 제 30 조 제 2 항, 제 31 조 제 1 항, 제 32 조 제 1 항, 제 33 조 제 1 항, 제 34 조 제 1 항, 제 35 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 항, 제 37 조 제 1 항, 제 38 조 제 1 항, 제 39 조 제 1 항, 제 40 조 제 1 항, 제 41 조 제 1 항, 제 42 조 제 1 항, 제 43 조 제 1 항, 제 44 조 제 1 항, 제 45 조 제 1 항, 제 46 조 제 1 항, 제 47 조 제 1 항, 제 48 조 제 1 항, 제 49 조 제 1 항, 제 50 조 제 1 항, 제 51 조 제 1 항, 제 52 조 제 1 항, 제 53 조 제 1 항, 제 54 조 제 1 항, 제 55 조 제 1 항, 제 56 조 제 1 항, 제 57 조 제 1 항, 제 58 조 제 1 항, 제 59 조 제 1 항, 제 60 조 제 1 항, 제 61 조 제 1 항, 제 62 조 제 1 항, 제 63 조 제 1 항, 제 64 조 제 1 항, 제 65 조 제 1 항, 제 66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1 항, 제 68 조 제 1 항, 제 69 조 제 1 항, 제 70 조 제 1 항, 제 71 조 제 1 항, 제 72 조 제 1 항, 제 73 조 제 1 항, 제 74 조 제 1 항, 제 75 조 제 1 항, 제 76 조 제 1 항, 제 77 조 제 1 항, 제 78 조 제 1 항, 제 79 조 제 1 항, 제 80 조 제 1 항, 제 81 조 제 1 항, 제 82 조 제 1 항, 제 83 조 제 1 항, 제 84 조 제 1 항, 제 85 조 제 1 항, 제 86 조 제 1 항, 제 87 조 제 1 항, 제 88 조 제 1 항, 제 89 조 제 1 항, 제 90 조 제 1 항, 제 91 조 제 1 항, 제 92 조 제 1 항, 제 93 조 제 1 항, 제 94 조 제 1 항, 제 95 조 제 1 항, 제 96 조 제 1 항, 제 97 조 제 1 항, 제 98 조 제 1 항, 제 99 조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			<삭제>	<삭제>
	2~4	(생략)		1~3	(현행과 같음)		
	5	○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자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 명령	수도법 제 11 조 제 4 항	<삭제>			
	6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 65 조 제 2 항 제 1 호, 제 3 항 제 1 호 2 호	<삭제>			
	7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5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등	먹는물 관리법 제 34 조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방 호 구조과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 치허가 취소, 사용정지권	<u>소방법 제 16조</u> <u>제1항, 제3항</u> <u>동법 제17조</u> <u>제2항,제3항</u> <u>동법 제19조</u> <u>동법 제22조</u> <u>동법 제25조</u>	방 호 구조과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 . . ., 사용정지	<u>위험물안전관</u> <u>리법제 6조제</u> <u>1항, 제11조</u> <u>동법 제 8조</u> <u>제1항,제 9조</u> <u>제1항</u> <u>동법 제10조</u> <u>동법 제17조</u> <u>동법 제12조</u>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대상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생략)			총무과		(현행과 같음)		
	2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 능직공무원 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 수원장	지방공무원 법 제 6조제 2항		2	○ 5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 직공무원의 원 내 전보권	자 치 연 수원장	지 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생략) ○ (생략) <신설>	농업기 술원장	지방공무원 법제6조제2항		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5급상당 지방 연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 내 전보권 (연 구소장 및 시 협장장은 제외)	농업기술 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생략)					(현행과 같음)		
	5	○ 6급이하 지방공 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생명산 업추진 단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 2항		5	· 5급이하 지방공 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생명산 업추진 단장	지 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1 0	(생략)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총 무 과

### 【지방자치법】

**제6조 (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자원관리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량기의 제작업
2. 계량기의 수리업
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

**제32조 (검사)** 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정기검사의 증인)** ①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법정 계량을 행하

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보고 및 검사의 절차·검사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정밀도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부정계량기의 처리)**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시·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의 표시 또는 실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그밖에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계량기나 실량표시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도지사는 제작업자·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자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제41조 (청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②시·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호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4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월 전에 검사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 서식의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를 수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제31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 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 안전 확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

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 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 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도지사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 포장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시·도지사는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 설비·당해 공산품·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0.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

한 자

12.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5.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6.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9.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당해 공산품을 판매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제8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과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 2 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②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과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의 부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과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언론매체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또는 수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6조제3항 각호의 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 또는 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 및 검사설비·전기용품·서류·장부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각호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정기검사·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당해 관계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교통물류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운송개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

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송약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을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

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제1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자동차대여약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 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34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및 변경

**제36조 (준용규정)**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 2.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 (이하 "차량충당 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 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5.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10.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를 받은 때

1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시설에 관한 공사를 한 때

1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때

1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 면허가 취소된 때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9조 (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과태료)**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00.1.28>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0.1.28>
8.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③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건축법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농산지원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녹지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保安林)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도 또는 방화선(放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가로수관리청)**

- ①가로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가로수관리청을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 과 관리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1>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군수	

## 보건위생과

## 【전염병 예방법】

**제8조 (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 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응할 수 있다

**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유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콜레라·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8 (영업의 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국립검역소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수질관리과

### 【 먹는물 관리법 】

**제34조(출입·검사·수거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 물 관련 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등을 무상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영업의 허가등)** ①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 【 지하수법 】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

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 (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 지하수법 시행령 】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 구역 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개발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어업용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환 경 과

### 【폐기물 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략)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동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1 (생략)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영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허용량의 변경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 (폐기물처리사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기준)**

①영 제6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임시보관 시설에 폐전주(폐전주 철거시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 성수지 제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보관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삭제 <2004.8.11>

다.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마.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도록 할 것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 증빙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 신청서에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폐기물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승인을 얻은 보관량의 변경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법 제26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수집·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삭제 <2005.1.19>

3.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 냉동보관할 수 있는 섭씨 0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4.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5.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동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